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서 대 전 요 양 원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

① 입소대상

- 가.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, 2등급 입소자
- 나. 3~5등급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입소자
- 다.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은 입소자
- 라. 기타 등급외자 등

② 입소정원 : 29명

③ 모집방법

- 가. 지역 내 각종 신문, 방송, 생활정보지, 소식지 등을 통해 모집한다.
- 나.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, SNS 등 인터넷 홍보방법으로 모집한다.
- 다. 기관 홍보용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.
- 라. 현수막 게시 및 기관차량, 대중교통 등 외부광고를 통해 모집한다.
- 마. 유관기관 관계자 및 보호자, 종사자 등을 통해 모집한다.
- 바. 지역사회 내 각종 행사 및 경로당 방문활동 등을 통해 모집한다.

2. 입소계약

① 계약기간

- 가.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나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비급여 항목(금액 포함)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계약목적

- 가.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,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나. 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

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1조)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,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·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입소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급여 비용은 입소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,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.
-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4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

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5. 계약의 해지

-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소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가.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
 - 나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다. 입소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
 - 라.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
 - 마.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
 - 바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
- ② 입소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6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- ①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- 가.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나.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- 다.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
- ②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
 - 가.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공
 - 나. 급여비용(수가)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가변경 내역을 문자 발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설명
 - 다.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급여항목 및 금액 변경내역서를 제공하고 설명